

나눔터 소개

나눔터란?

활용되지 않는 국가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이전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연구시설·장비의 상세정보, 이전 진행상황 등 사용자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요청하면 유사 시설·장비를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비이전은 왜 필요한가요?

연구장비 보유기관에서는 연구자의 퇴직이나 이직, 그리고 연구 주제의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 장비의 활용도가 낮아져 유휴·저활용장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유휴·저활용장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이전시켜 장비의 활용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을 통해 유휴·저활용장비의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전장비등록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불용을 결정하고 무상양여(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 포함)하도록 판정한 장비를 등록합니다.

등록할 장비는 반드시 장비이전동의서를 작성하고, ZEUS 나눔터의 장비등록하기를 통해 등록합니다.

장비이전신청

ZEUS 나눔터에 등록된 장비 중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장비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되면 해당 장비를 이전·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견적을 제조업체(또는 공급업체)를 통해 마련합니다.

이전신청서류(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2부, 기타 증빙서류)가 준비되면, ZEUS 나눔터의 장비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합니다.

나눔유형

나눔유형	적용기준
일반이전	안쓰는 장비를 필요로 하는 타 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체이전	하나의 장비를 2점 이상 분리하여 여러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
지정이전	양도기관이 타당한 사유에 의해 양수기관을 지정하여 이전하는 경우

장비이전절차 어떻게 되나요?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학·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저활용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필요로 하는 타 기관에 이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항목

나눔장비의 사전점검비, 이전비, 수리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전점검비 : 나눔장비의 사전 점검 시 발생하는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등)

장비이전비 : 나눔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장비수리비 : 나눔장비의 이전 후 가동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용 제외)

지원규모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단, 양도기관이 물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일 경우 중소기업은 양수 신청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단,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신청서류

필수 제출 자료 :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용 견적서(2부 이상)

중소기업 필수 제출자료

가.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검색 확인

나. 추가 제출서류 : 아래 항목의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연번	추가 제출서류	확인 방법(증빙서류)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보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 검색 확인
②	참여 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가 R&D 과제협약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www.ntis.go.kr/) 검색 확인
③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검색 확인
④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종합정보망(www.mctnet.org/) 검색 확인
⑤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사)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 검색 확인
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www.innobiz.net/) 검색 확인
⑦	부·처·청 공신인증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에 따른 부·처·청에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 정부24 중앙행정기관 (정부/지자체 조직도) 검색 확인

-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재무제표
- 라. 기업현황 설명자료(이전장비 활용 예상실적 포함(사업화, 시제품개발 등))

※ 다, 라 항목은 1~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되는 기관(연구자)일 경우, 신청제외 대상으로 지정
 - ☞ 부모 또는 휴·폐업 중이거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한 중소기업
 - ☞ 전년도 본 사업에서 이전지원 결정된 장비 또는 금액을 취소한 기관(연구자)
 - ☞ 이전완료장비에 대한 구동상태확인서 미제출 기관(연구자), 활용실적조사의 의무적(2회) 미이행 기관(연구자)
 - ☞ 기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전심의위원회 알아보기

심의위원

400명 이상의 높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 선정은 심의대상 시설·장비수 및 활용 분야를 고려하여 산·학·연별, 표준분류별 비율을 고르게 안배하여 구성합니다.

심의방식

모든 심의는 요청자가 제출한 장비이전신청서, 장비활용계획서 등을 검토하며 심의방식은 대면평가와 서면평가로 구분됩니다.

서면평가 : 대면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반·지정·나눔형 연구시설 장비

대면평가 : 장비당 10~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참고> 대면평가 기준

- ① 취득금액 3,000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2개 기관 이상이 동일하게 신청(경쟁이 발생)한 경우
- ② 동일 기관이 5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경우
- ③ 취득금액이 5억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경우
- ④ 취득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심의결과

심의위원은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신청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양수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때 연구인프라 확충 및 R&D 기술력 향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장비 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심의 이후 일정

1차 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 → 최종 결과 및 계약 안내 → 3차 계약 체결 → 장비이전 → 이전비용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장비이전신청 전에 반드시 장비보유기관에 방문하셔서 장비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견적서는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비, 수리비 등을 구분하여 각 항목마다 산출근거를 상세히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비교견적서상 상세사양 및 세부구성항목의 비교가 가능해야 함

모든 심의는 제출한 활용계획서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활용계획서의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각 항목의 내용을 객관적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필독

【필독】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예시 자료